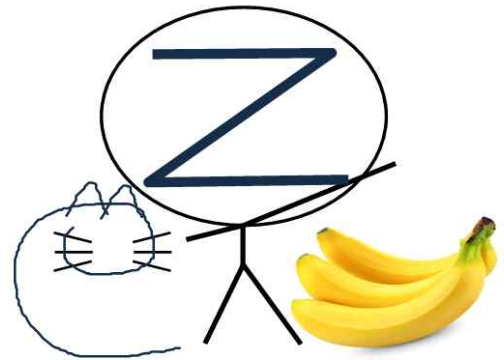


오르비(<https://orbi.kr>)

1타 같은 N타

독서
~~생활과~~ 윤리
Zola 2

-킬러 · 통수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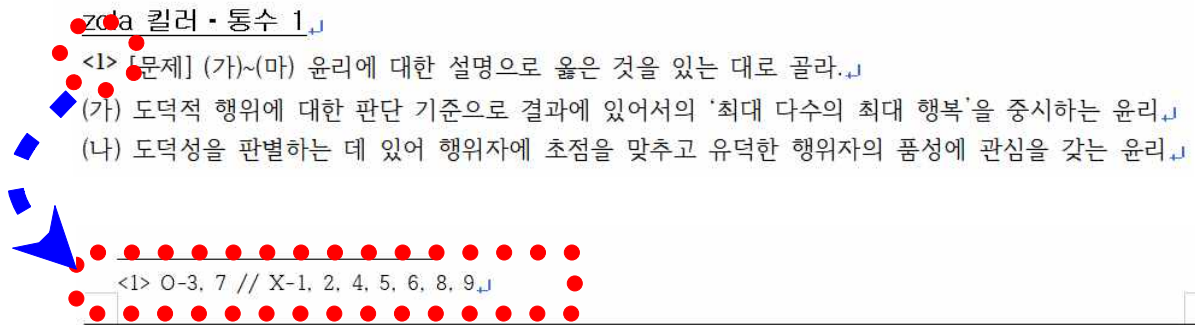
오르비 인강 교재(<https://class.orbi.kr/>)

1. 강의 및 교재 차례

	차례
0	[특별 제공] 강의 안내
1	킬러 · 통수 in 윤리학 구분
2	킬러 · 통수 in 윤리 이론 1
3	킬러 · 통수 in 윤리 이론 2
4	킬러 · 통수 in 환경 윤리
5	킬러 · 통수 in 사회윤리와 개인윤리
6	킬러 · 통수 in 분배 정의
7	킬러 · 통수 in 교정 정의
8	킬러 · 통수 in 준법과 시민 불복종
9	킬러 · 통수 in 전쟁과 평화
10	킬러 · 통수 in 해외원조
11	킬러 · 통수 in 동양 사상(자연관, 죽음관)
12	[특별 제공] 킬러 · 통수 in 9평

2. 교재 답 확인 법

교재의 문제 앞에 조금 작게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에 맞추어서 해당 페이지 아래를 확인하면 됩니다.



열공 + 즐공 = 대박!!!

- 3 -

by Zola

3. 교재 주의사항

Zola Bonus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개념 강의를 듣는 분들은 개념 강의의 자료 교재를 참고하시는 것이 더 도움되실 겁니다.

열공+즐공=대박!!!!

1강

킬러 · 통수 in 윤리학 구분

zola 킬러 · 통수 1

<1> [문제] (가)~(마)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 (가)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결과에 있어서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하는 윤리
- (나) 도덕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유덕한 행위자의 품성에 관심을 갖는 윤리
- (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윤리
- (라) 현대 사회의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윤리
- (마) 도덕적 신념과 실제적 관습에 관해 관찰하고 연구하는 윤리

1. (가)는 (다)에 비해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
2. (가)는 (나)보다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 '선이란 무엇인가?'는 (나)가 중시하는 탐구 주제 중의 하나이다.
4. (라)는 (나)와 달리 도덕적 문제 해결의 토대를 제공한다.
5. (나)는 (가)에 비해 학제적 성격이 강하다.
6. (마)는 당위가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7. (마)는 개인의 도덕 판단은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다고 본다.
8. (다)는 (나)와 달리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9. (마)는 (라)와 달리 경험적인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1> O-3, 7
X-1, 2, 4, 5, 6, 8, 9

zola 킬러 · 통수 2

<2> [Zola]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본 개념과 '연결'시켜서 OX를 판단하려고 노력할 것.

1. 기술 윤리학은 문화의 다양성(상대성)을 전제로 한다.
- 2-1. 어떤 도덕 이론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실천 규범 윤리가 아닌 이론 규범 윤리이다.
- 2-2. 어떤 도덕 이론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이론 규범 윤리가 아닌 실천 규범 윤리이다.
3. 규범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결론을 도출한다.
4. 규범 윤리학은 사실 판단을 배제한 채 결론을 도출한다.
5. 실천 규범 윤리학은 경험 과학적 조사를 활용한다.
6. 실천 규범 윤리학은 경험 과학적 조사를 윤리학의 본질로 삼는다.
7. 기술 윤리학의 연구 내용은 실천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8. 규범(이론)윤리학은 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보다는 당위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데 주력한다.
9. 규범 윤리학은 인식 가능한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10. '선이란 무엇인가'를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11. 아래의 밑줄 친 여러분의 판단은 타당한가?
[제시문] 도덕적 진술은 논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여러분의 판단] 메타 윤리학 제시문이다.
12. 아래의 밑줄 친 여러분의 판단은 타당한가?
[제시문] 도덕적 진술은 논리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
[여러분의 판단] 메타 윤리학 제시문이다.

<2> O-1, 5, 9, 11(타당함), 12(타당함)
X-2-1, 2-2, 3, 4, 6, 7, 8, 10

Zola Bonus

1. [교학사 교과서, 일부 수정] 윤리학의 구분 및 전개 과정

전통적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었다. 전통적으로 윤리학자들은 인생에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목적’과 ‘법칙’으로 작용하는 도덕규범(道德規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규범에 기초하여 앞에서와 같은 실천적 물음에 답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리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윤리학자들은, 전통 윤리학이 인간의 현실적인 도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윤리학적 회의론에 빠졌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앞에서 제기된 규범 윤리학적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부터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은 1930년대에 이르러 도덕적 언어 내지 의미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하여야 한다는 이론 철학으로서의 메타 윤리학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적 물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규범 윤리학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규범 윤리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조가 팽배하였다. 왜냐하면 메타 윤리학 자체는 인간의 삶을 안내하거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조는 더 나아가 규범 윤리학이 제시하는 도덕 이론을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적용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응용 윤리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응용 윤리학은 윤리학의 본질이 ‘실천’에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2. [17 ebs 수완 재인용] 윤리학의 분류 중에서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인 용어의 의미와 분석을 주요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분석 윤리학이라 부르기도 한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론적이고 논증의 논리적인, 그리고 인식론적인 구조를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려 한다. ‘의미론적’이란 단어와 진술의 의미를 말하고, ‘논리적’이란 결론이 근거로부터 도출된다는 뜻이며, ‘인식론적’이란 지식을 의미한다.

기술 윤리학은 개인의 현실적인 도덕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고, 그가 가진 도덕 판단 또한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도 탐구될 수 있다고 본다. 기술 윤리학은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풍습 또는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3. [ebs 수특] 기술 윤리학

(15/18)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 윤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덕적 관행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관한 사실들과 같은 문화적 ‘사실’로 본다. 이 점에서 기술 윤리학은 윤리 이론으로서의 규범 윤리학이나 메타 윤리학과 다르다.

(17)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과학적 탐구를 통해 현실적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추구하고 또 얻을 수 있다. 인류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들은 여러 다른 사회와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탐구해 왔다. …(중략)…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이러한 경험적 지식은 현실적 도덕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며 설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편의상 현실적 도덕에 관한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기술 윤리학(descriptive ethics)이라고 부를 수 있다.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2강

킬러 · 통수 in 윤리 이론 1

zola 킬러 · 통수 1

◆자연법(스토아, 아퀴나스)◆

<3> [문제] zola OX

1. 도덕 원리는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다.
2. 도덕적 기준은 인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3. 자연이 아닌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인간이 제정한 자연법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하다.
5. 자연법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실정법과 구분된다.
6.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3> O-1

X-2, 3, 4, 5, 6

zola 킬러 · 통수 2

◆칸트◆

<4> [문제] zola OX

1.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2. 행위 그 자체가 옳은지 따져보고 행위해야 한다.
3. (의무가 문제일 경우)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4. 도덕 원리는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다.
5. 도덕법칙은 무조건적이며 필연적이다.
- 6-1. 도덕적 행위는 강제적 법칙을 따르는 자율적 행위이다.
- 6-2. 의무는 개인에게 도덕 법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에 어긋난다.
7. 도덕적 행위는 반드시 이성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8. 행위의 도덕성은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려는 의지에 기초한다.
9. 이성인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다.
10. 행복한 삶과 도덕적 삶은 양립 가능하다.
11.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행복 증진과 상충한다.
12. 준칙에 따르는 모든 명령은 무조건적 의무의 요구이다.
13. 행복의 원리는 준칙을 제공해 줄 수 있다.
14.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따라야 한다.

<4> O-2, 3, 5, 6-1, 7, 8, 10, 13, 14

X-1, 4, 6-2, 9, 11, 12

3강

킬러 · 통수 in 윤리 이론 2

zola 킬러 · 통수 1

◆공리주의◆

<5> [문제] zola OX

1. 인간은 본래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2. 규칙 공리주의와 달리 행위 공리주의는 인간을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존재로 본다.
3.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4. 개인의 쾌락과 사회의 쾌락은 항상 일치한다.
5. 나의 쾌락보다 타인의 쾌락을 더 중시해야 한다.
6.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것은 도덕의 원리와 무관하다.
7.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 분배는 공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8. 공리성의 원리는 개인의 행동이 아닌 외적 강제력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9. 인간의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0. 도덕적 행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이익(쾌락)을 얻어야 한다.
11.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의 감내(堪耐)를 행위의 동기로 삼는다.
12. 더 큰 쾌락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13.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은 배제되어야 한다.

<5> O-1, 3, 9, 12

X-2, 4, 5, 6, 7, 8, 10, 11, 13

zola 킬러 · 통수 2

<6> [문제] 갑, 을이 동시에 긍정 혹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들은?
(동시에 긍정, 혹은 동시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들)

갑: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 있어서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이자 강제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의무로 생각되어야 한다.

을: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그 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 할 수 있다.

1. 인생에는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 존재하는가?
2.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 삶과 모순되는가?
3.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하는가?
4. 남을 이롭게 하는행위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5.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이 선(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6. 타인을 배제한 개인적 행복을 도덕원리로 삼을 수는 없는가?
7.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경우가 있는가?

<6> 긍정-1, 3, 4, 6, 7
부정-2, 5

Zola Bonus

1. [미래엔+비상교육] 자연법

의무론적 접근의 또 다른 예로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자연법 윤리를 들 수 있다. 정언 명법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본 칸트와 달리 자연법 윤리는 인간 본성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본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을 의미한다. 자연법 윤리의 기초를 제시한 스토아학파는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연법 윤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라는 핵심 명제를 강조한다.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지만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 일반적으로 말해 ‘자연스러운 행위’는 옳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는 옳지 않다. 이처럼 자연법 윤리에서는 어떤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검토한다.

그렇다면 자연의 질서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하였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신과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과 이성적 존재로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자연법 윤리는 이러한 성향으로부터 생명의 불가침성 및 존엄성, 인간 양심의 자유, 만민 평등 등의 자연법적 권리를 도출한다.

이처럼 자연법 윤리설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의무를 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법을 만들 때에 기본적인 인권인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 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2. 자연법 관련 제시문

(1) 스토아

① 전 대지와 온 하늘이 신의 존재이다. 신은 구정물 속에도, 회충 속에도, 범죄자 속에도 있다. 자연은 이렇게 살아 있는 전체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성을 갖춘 생명체이다. 이성이 자연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있기에 자연 자체가 이성적이고 영혼적이며 이해 가능한 것이다. 즉, 자연은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이다.(에픽테토스, “담화록”)

②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 소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이 소에게 일어날 수 없고, 포도나무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이 포도나무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숙명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연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아우렐리우스, “명상록”)

(2) 아퀴나스, “신학대전”

☞ Zola Guide 스토아 학파와 아퀴나스가 헛갈린다고 해서 큰 일 나지는 않음!

① 신(神)의 이성의 영원한 법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 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18 ebs 수특

② 인간이 자연적인 경향성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이 중에서 인간이 이성에 따라 행위하려는 경향성을 갖는 것은 올바르다. 선은 행해야 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첫 번째 계율로서, 이는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들의 기초가 된다. 실천 이성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선으로서 이해하는 것들은 모두 행해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들의 형식 아래 있는 자연법의 계율에 속한다. -포이만 외, “윤리학”

3. 칸트

(1)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밖의 정신의 재능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 또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성품이라 부르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조차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고 또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2)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 있어서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이자 강제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의무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3) 자연의 사물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를 하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실천 이성을 통하여 “그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하여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정언명령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엇이 도덕적 의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4)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바라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에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4. 벤담

(1)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해 준다. 한편으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사슬이 그것들의 옥좌에 걸려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가 그 지배를 뿌리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조력은 단지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증하거나 입증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2) 공리의 원리란, 모든 행위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좋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원리이다. 공리란 어떤 대상 속의 성질로서 그것이 관련된 당사자에게 이익·편의·쾌락·선·행복을 가져다주고 손해·고통·악·불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3) 공리를 계산하는 7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강력성, ② 지속성, ③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④ 근접성, ⑤ 다산성(즉 그것이 동일한 종류의 감각, 즉 쾌락인 경우에는 기타의 모든 쾌락, 고통인 경우에는 기타의 모든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 ⑥ 순수성(즉 그것이 반대의 종류의 감각, 즉 쾌락인 경우에는 모든 고통, 고통인 경우에는 모든 쾌락을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 ⑦ 그 범위(즉 그것이 미치는, 또는 [바꿔 말하자면]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

5. 밀

(1)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일을 해야 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측정할 때에는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2) 만족한 돼지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인 편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인 편이 더 낫다. 그리고 만일 바보나 돼지가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들이 이 문제에 있어 오직 그들 자신의 측면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과 비교되는 상대방, 즉 사람이나 소크라테스는 양쪽 측면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3)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한 쾌락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려면 열등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낮은 수준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4강

킬러 · 통수 in 환경 윤리

Zola B 나나나

<7> [문제] 바나나 선지(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선지)를 고르셈!

1.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
2.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3. 동물과 달리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4. 인간 아닌 생명체가 인간보다 중요하다.
5.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식물을 이용할 수 있다.
6.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7.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8.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윤리가 필요하다.
9.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10. 이성적 존재는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7> 모두 바나나 선지임.
항상 참(1, 2, 5, 6, 7, 8, 10).
항상 거짓(3,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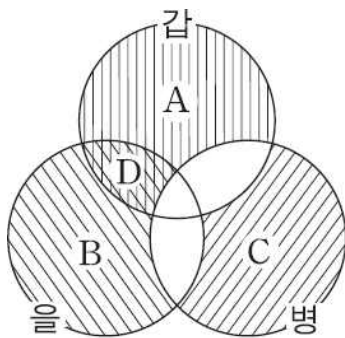
Zola 개념 1

<8> [18-6-15] 자료에 근거하여 선지의 진위 여부 판단할 것!

갑: 꽤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을: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C: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8> 참. 아래의 ebs 풀이(ebs 풀이나 다른 참고서 풀이나 거의 비슷함)와 Zola의 풀이(강의)를 비교해 보세요.
 [ebs 풀이]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해악 금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주장한다(ㄷ).
 [Zola의 개념형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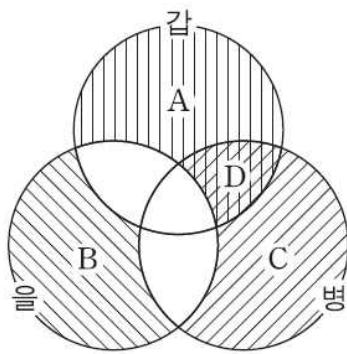
Zola 개념 2

<9> [18-수능-11] 자료에 근거하여 선지의 진위 여부 판단할 것!

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으로,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상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다.

병: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

<9> 참. 아래의 ebs 풀이(ebs 풀이나 다른 참고서 풀이나 거의 비슷함)와 Zola의 풀이(강의)를 비교해 보세요.
 [ebs 풀이]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싱어나 레오폴드가 주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테일러만의 주장에 해당한다(L).
 [Zola의 개념형 풀이]

zola 킬러 · 통수

[문제] zola OX하셈!

<10> ◆인간 중심주의◆

1. 자연 보호를 위한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다.
2. 동물이 가진 능력 중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것도 있다.
3. 인간은 자연에 대해 아는 것 이상으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4.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11> ◆동물 중심주의-싱어◆

1. 고통을 시사하는 행위를 식물에서 발견할 수 없다.
2. 평등은 도덕적 이념이다.
3. 평등은 도덕적 이념이지 사실에 대한 단언이 아니다.
4. 인간에게는 다른 종(種)들을 억압할 힘이 있다.
5. 동물들은 스스로 해방을 요구할 능력이 없다.
6. 종(種)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같은 종에 속함을 인식해야 한다.
7. 동물과 인간의 생존이 타협할 수 없는 갈등에 있다면 인간의 생존에 우선권이 있다.
8. 이성이 아니라 동물을 불쌍히 여기느냐에 근거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12> ◆동물 중심주의-레건◆

1. 도덕적 선악의 판단은 행위 주체의 주관적 정신 상태와 무관해야 한다.
2. 동물 실험은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정당화되지 못한다.
3. 생명 공동체가 아닌 삶의 주체만이 보존의 대상이다.
4.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10> O-1, 2, 4

X-3

<11> O-1, 2, 3, 4, 5, 7

X-6, 8

[8번 보강 자료] [원문] 동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동물들을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12> O-1, 4

X-2, 3

<13> ◆생명 중심주의◆

1.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2. 쾌고 감수 능력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3. 동물 사냥이나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4. 도덕적 대상은 도덕 행위자가 의무를 져야 할 실체의 지위를 갖는다.
5. (테일러) 의식이 없는 생명체도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존재이다.
6. (테일러) 육식보다 채식이 더 바람직하다.
7. (테일러)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해야 한다.

<14> ◆생태 중심주의◆

1. 생명체의 풍부함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2.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대지를 경제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4. 생명체와 달리 무생물은 생명 공동체의 균형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5. (레오폴드) 지구는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고 있다.
6. (레오폴드) 흙, 물 등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적 성질을 지닌다.

<13> O-1, 4, 5, 6 7

X-2, 3

<14> O-1, 3, 5, 6

X-2, 4

Zola Bonus

환경 윤리 사상가 모음(교과서, ebs, 여러 원전, 원전을 인용한 저서 등등)

☞ Zola Guide 이해 안가는 부분에 관심 고고, 개념(인간/동물/생명/생태)을 구분할 수 있는 point에만 신경쓰면 됨!

1. 인간 중심주의

(1) 아리스토텔레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가축이나 식량이 기타 용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야생 동물도 그러하다. 즉 야생 동물은 식량이나 다른 기타의 용도, 즉 의복이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 아퀴나스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3) 베이컨

① 방향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은 구속되어야 하고,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②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③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4) 데카르트

① 신체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분할될 수 있지만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체와 정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정신, 즉 사유하는 실체로서의 나 자신을 고찰할 때 나는 내 안에서 어떤 부분도 구분할 수 없으며, 나 자신을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 정신 전체가 몸 전체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의 발이나 팔 또는 다른 신체 부분이 절단될 때에도 나의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인식한다.

②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절대로 거짓된 것으로서 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지 않을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중략) ... 그러나 금방 그 뒤에 그렇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동안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무엇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하여, 회의론자가 제아무리 터무니없는 상정을 모두 합치더라도 이것을 흔들여 놓을 수 없음을 주목하고서, 나는 주저 없이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 1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천재교육] 근대 합리론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선언을 통하여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은 인식 주체인 인간이 인식 대상인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사유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었다.

③ 많은 동물들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보여 주지만 다른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 그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오히려 동물들은 그들의 정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 속에 있는 기관들의 배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자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바퀴와 태엽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계가 우리가 온갖 재주를 기울이는 이상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 있는 것과 같다.

(5) 칸트

① 인간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고 이러저러한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또한 다른 이성적 존재를 향한 모든 행위에 있어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 가치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불린다.

②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예컨대 광물계의 아름다운 결정체들, 식물계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를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정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성적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조물과 관련하여 볼 때,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로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을 죽여야 할 경우 가능한 빨리(고통이 없이) 죽여야 하며 동물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그 동물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동물들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에 속한다. 직접적인 의무는 항상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6) 맥클로스키, “환경 윤리와 환경 정책”(교학사)

동물에게 권리가 부여된다고 할 경우 동물이 자기의 도덕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지식도 가질 수 없다. 동물은 권리를 행사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Zola Guide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축을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글임. 맥클로스키가 나온다고 해서 고난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임. 독해와 인간 중심주의 개념으로 해결됨.

(7) 패스모어(데자르뎡, “환경윤리(제5판)” 재인용)

기독교건 공리주의건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폐기물을 바다나 대기 중에 버리는 일, 생태계의 파괴, 아이를 많이 낳는 일, 자원의 고갈 등이 동료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정도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어떤 것의 보충 없이도 우리의 생태적 관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 Zola Guide 글을 보면 ‘전통적인 도덕으로 생태계 보호가 충분하다’가 결론이다. 그리고 전통적 도덕은 ‘타인(미래 또는 현재의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는 것이다. 이는 도덕의 범위가 인간(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게 한정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속한다.

[참고] 데자르댕, “환경 윤리”(미래엔)

패스모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대 서양 윤리학을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덕 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리를 보다 잘 준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기존의 도덕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 현재의 생태 위기를 낳은 주범은 다름 아닌 인간의 탐욕과 단견(短見)이며, 이것은 사려 깊게 행동하라는 종전의 윤리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 중심 사회의 물질적 탐욕을 한탄하면서 세계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모어의 윤리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다. 그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 우리가 자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그 책임의 바탕에 인간의 이익과 관심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 Zola Guide 패스모어를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온건한’에 대한 지식을 지우세요. 어찌되었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2. 동물 중심주의

(1) 싱어(15 ebs 수특, 16 ebs 수특, 기타 원전)

①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기준이 유일하게 옹호되는 이유이다.

②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관심(interest)을 갖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누군가 이익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기 위해서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어린이가 길가의 돌멩이를 발로 찼다고 해서 돌멩이의 이익관심이 손상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돌멩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쥐는 발에 차이 지 않을 이익관심을 갖는다. 발에 차인다면 쥐는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③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면,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이익과 먹혀지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정말 균형을 이루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를 때, 우리 자신의 보다 작은 이익을 위해 동물의 중요한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이러한 생산 과정[공장식 농장(factory farm)]의 결과물을 사는 것은 이러한 생산 과정을 지지하고 생산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게 될 동물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어려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를 채식주의자들의 생활 방식에 가까운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 Zola Guide 싱어는 동물 고기를 값싸게 생산하기 위해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공장식 사육에 반대함.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싱어의 주장임.

④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는 평등한 또는 동일한 처우(treatm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리는 단지 평등하게 배려하길 요구할 따름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을 평등하게 배려한다는 것은 그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하며, 그들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⑤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대략적이거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limit of sentience, 비록 정확한 약어는 아니지만 고통 그리고/또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간략하게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예컨대 피부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경계 기준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⑥ 사람들이 때때로 모든 동물실험이 중요한 의학적 목표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험이 만들어내는 고통보다 덜어주는 고통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1920년대에 '치사량'이나 샘플 동물의 50%가 죽게 되는 흡수율을 발견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인 LD50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인기 있는 주름개선 처치제인 보톡스라는 화장품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쥐에게 다양한 양을 투여한다. 충분히 높은 양이 투여된 쥐들은 호흡 근육이 마비됨에 따라 천천히 질식사하여 죽는데, 물론

상당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죽는다. 이러한 시험들은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 인간의 미용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생산물들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나이든 이들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러한 것들 없이, 주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2) 레건(16 ebs 수특, 기타 원전)

① 믿음과 욕구를 갖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고, 선택적 및 복지적 이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간상의 변화에도 심리적·물리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 Zola Guide 공리주의적 입장인 싱어와 달리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함.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각, 기억,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의 특성이 요구됨.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존재(인간과 일부 동물)는 삶의 주체이며,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님.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험, 매매, 사냥, 식용화, 애완 등은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함.

☞ Zola Guide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center)이고 레건은 삶의 주체(subject)임. 교육청 문제에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음. [참고] <https://orbi.kr/00013517546>

[참고]는 제가 쓴 글은 아님. [참고]에서 제(Zola)가 언급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핵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함.

그런데 Zola 라는 분이 영어 원전에서 테일러는 ‘center of life’라고 했고, 레건은 ‘subject of life’라고 했다고 댓글을 달더군요. 그때부터 영어 원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테일러는 단 한 번도 ‘subject of a lif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디다. 그렇다면 데자르댕 번역서에서 ‘목적론적 삶의 주체’라고 한 것(단 한 군데에서만 그랬지만)은 오역임이 분명합니다(저는 오역 보다는 오타, 오키로 봅니다.). center를 ‘주체’로 번역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번역도 지 끌리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② 식용 송아지의 비참한 모습은 애처롭고 마음 아프게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은 고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박탈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때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혼동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를 위해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외과수술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스포츠나 돈을 위해 사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즉 동물을 우리의 자원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는 체제다.

☞ Zola Guide 레건이 싱어와 다른 점을 잘 보여주는 글임. 동물 윤리가 ‘고통’의 문제로 보는 싱어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레건의 입장임.

3. 생명 중심주의

(1) 슈바이처(교학사, 천재교육, 18 ebs 수특)

①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에게 주는 생명에 대한 동일한 외경을 살려고 애쓰는 모든 존재에게 주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다. 인간은 존재의 생명을 경험한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하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에게 고귀한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수용한다. 이것은 도덕의 절대적이면서 근본적인 원리이다.

②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③ 수많은 방식으로 나의 존재는 다른 생명과 갈등에 빠진다. 나는 생명을 죽이고 해칠 수밖에 없다. 내가 외딴 오솔길을 걸을 때, 내 발은 그 길에 사는 작은 생명체를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한다.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존재를 해치는 존재로부터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 나는 동물과 식물을 죽임으로써 나의 영양을 섭취한다.

④ 자기 들판에서 소에게 줄 건초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풀을 뜯은 농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핀 꽃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꽃을 꺾음으로써 그는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생명에게 그릇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2) 테일러(16~18 ebs 수특, 기타 원전)

①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은 그 존재의 쾌고 감수 능력이 아니라 도덕 행위자들에 의해 촉진되거나 손상받을 수 있는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중략)…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내적 기능과 외적 활동들이 모두 목적 지향적으로 자신의 유기체적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일정한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체는 그러한 경향을 통해서 종을 재생산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사건에 적응하는 생물학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②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③ 기본 관점(4개)

ㄱ.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ㄴ. 지구의 자연적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네트워크(연계망)이다.

ㄷ.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ㄹ. 인간은 본질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④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ㄱ. 악행 금지(불침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함
 - ㄴ. 불간섭: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함
 - ㄷ. 성실(신의):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 행위를 금지해야 함
 - ㄹ. 보상적 정의: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
- ☞ Zola Guide 테일러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을 강의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Zola가 현강과 여러 입시 사이트들의 테일러 관련 질문들을 눈팅해 본 결과 님들은 공부의 point가 조금 빛나가 있는 듯함.

⑤ 예를 들어 우리는 나비의 이해관계나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나비가 어떤 것을 선호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당장에 부정할 것이다. (b)그러나 일단 우리가 나비의 일생을 이해하게 되고, 나비가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건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이로운 것이 무엇이고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a)단세포의 원생동물과 같은 단순한 동물 유기체들을 고려할 때조차도, 그것에 이롭거나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환경 변화가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그리고 (b)어떤 물리적 환경이 좋거나 나쁜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a)유기체들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Zola Guide 제시문에 ‘나비의 이해관계’가 나와서 싱어와 헛갈릴 수는 부분임. (a)을 보면 싱어가 아닌 것은 알 수 있을 것임. ‘유기체(생명체)에 관심을 가져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테일러가 말하는 자연 존중을 말할 때 (b) 부분을 참고한다면 생명체가 없는 것은 ‘조건’이나 ‘물리적 환경’으로 간주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⑥ 우선성의 원리(18 ebs 수완, “생활과 윤리”(문종길, 198~199쪽))

☞ Zola Guide 외우려고 하지 마! 읽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임.

테일러는 인간의 활동이 살아 있는 생명체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절차적 규칙들을 우선성의 원리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자기 방어, 비례(균형)의 원리, 최소악의 원리, 분배적 정의의 원리, 그리고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이다. 자기 방어, 비례(균형)의 원리란 도덕적 행위자에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이것은 위협하거나 위협적인 유기체들을 대항해 도덕적 행위자가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비례(균형)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명품 소비를 위한 동물 가죽)와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생존)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한다는 원리이다. 최소악의 원리란 인간의 부차적 인간관계이지만 문명 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온 것들과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열린 자세로 동식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분배적 정의의 원리란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불가피하게 동식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원리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육식보다는 채식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란 최소악의 원리와 분배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비인간인 유기체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리이다.

* 테일러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우선성의 원리로 ① 자기 방어, ② 비례(균형)의 원리, ③ 최소악의 원리, ④ 분배적 정의의 원리, ⑤ 보상적(복원적) 정의의 원리를 제시한다.

4. 생태 중심주의(15 · 18 ebs 수록, 기타 원전)

(1) 레오폴드

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무생물적 자연’을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들은 지구와 인간 사이에는 지구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껴 왔다.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무생물)’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②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모든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의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 심미적으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의 관점에서도 검토해라.

③ 대지 윤리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흙, 물, 식물, 동물, 곤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한다.

④ 대지 윤리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를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로부터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류는 동료 구성원들과 전체 공동체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⑤ 어떤 것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integrity), 안정성(stability), 아름다움(beauty)을 보전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르다. -레오폴드, “샌드 카운티의 일년”

[15 ebs 수록]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大地)로 확대한다. 그에게 있어서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땅을 터전으로 하는 생명 공동체이다. 그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보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심층 생태주의의 주요 원리(네스와 세션스)(데자르댕, “환경윤리”)

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번성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의 가치는 협의의 인간의 목적에서 나오는 유용성과 무관하다.

②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번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③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④ 현재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과도하며,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⑤ 인간의 삶과 문화가 번성하려면 인구가 근본적으로 줄어야 한다. 자연계의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⑥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조성하려면 정치적 변혁이 필요하다. 정치적 변혁을 통해 경제, 기술, 이데올로기의 기본 구조를 바꿀 수 있다.

⑦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갖는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큰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

⑧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은 필요한 변화를 위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 Zola Guide 레오폴드랑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명 중심주의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함. 일부 제시문은 생명 중심주의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임.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임. 강의 반드시 확인할 것.

5강

킬러 · 통수 in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zola 킬러 · 통수 1

◆니부어◆

<15> [문제] zola OX

1. 인간의 본성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면에서 부족하지 않다.
2. 개인의 이기심은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다.
3. 사회와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다.
4. 사회와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5. 사회와 개인의 도덕적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6. 사회와 개인의 도덕적 입장은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
7. 개인이 모두 도덕적이면 사회 갈등이 해결된다.
8. 애국심은 국가 간 대립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9. 애국심은 또 다른 형태의 이기주의이기도 하다.
10. 애국심은 지역적 충성과 비교할 때 고차적인 형태의 이타주의이다.
11. 개인의 비이기성은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
12.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13.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14. 인간 생활을 보장해주는 산물들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15. 재화의 분배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해야 한다.
16. 사회 정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꼭 필요하다.
17.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과 폭력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18.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라도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
19.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주는 것은 불필요하다.
21.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22.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는 사회적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

<15> O-1, 2, 3, 4, 5, 6,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1
X-7, 12, 20, 22

zola 킬러 · 통수 2

<16> [문제] 제시문에 근거하여 선지 ox판별하시오.

[제시문] 악의지(ill-will) 이외에 본성상 비도덕적인 것은 있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선의지(good-will) 이외에 본성상 선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선지] 폭력이나 혁명은 본성상 비도덕적이다.

<16> X

Zola Bonus

<17> [기출 선지들] OX 확인해 보자!

[14-9-15, 78%] 사회 부정의는 <u>외적 강제력</u> 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14-수능-19-ㄷ, 47%] <u>사회적 강제력</u> 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14-수능-19-ㄹ, 47%] <u>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u> 은 배제하세요.	
[15-수능-19-ㄱ, 41%] <u>선의지의 통제</u> 를 받는 <u>비합리적 수단</u> 이 필요하다.	
[15-수능-19-ㄹ, 41%] <u>도덕적 설득</u> 과 <u>정치적 강제력</u> 이 병행되어야 한다.	
[16-9-6, 79%]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u>합리적인 사회 강제력</u> 을 권고한다.	
[17-6-10-ㄷ,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선의지의 함양</u> 이 필요하다.	
[17-6-10-ㄹ,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강제력</u> 의 사용이 필요하다.	
[17-수능-5, 72%] 개인 간 갈등은 <u>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u> 으로 조정될 수 있다.	
[18-수능-13, 89%] 진정한 정의는 <u>선의지만으로</u>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19-6-13, 62%]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u>비이기적 태도</u> 를 취할 수 있다.	
[19-수능-3, 54%] <u>최소한의 강제력</u> 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7> 아래 확인

[14-9-15, 78%] 사회 부정의는 <u>외적 강제력</u> 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O
[14-수능-19-ㄷ, 47%] <u>사회적 강제력</u> 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O
[14-수능-19-ㄹ, 47%] <u>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u> 은 배제하세요.	X
[15-수능-19-ㄱ, 41%] <u>선의지의 통제</u> 를 받는 <u>비합리적 수단</u> 이 필요하다.	O
[15-수능-19-ㄹ, 41%] <u>도덕적 설득</u> 과 <u>정치적 강제력</u> 이 병행되어야 한다.	O
[16-9-6, 79%]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u>합리적인 사회 강제력</u> 을 권고한다.	O
[17-6-10-ㄷ,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선의지의 함양</u> 이 필요하다.	O
[17-6-10-ㄹ,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강제력</u> 의 사용이 필요하다.	O
[17-수능-5, 72%] 개인 간 갈등은 <u>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u> 으로 조정될 수 있다.	O
[18-수능-13, 89%] 진정한 정의는 <u>선의지만으로</u>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X
[19-6-13, 62%]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u>비이기적 태도</u> 를 취할 수 있다.	O
[19-수능-3, 54%] <u>최소한의 강제력</u> 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

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

[천재교육 교과서] 니부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이성적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감을 갖게 하며, 교육을 통하여 정의감이 길러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어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인적 이기심은 개별적으로는 점잖게 나타나지만,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에는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 사회를 둘러싸는 문제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도덕의 숭고한 규범들에 충실해야 할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명백히 악한 방향으로 기울 때에는 그 집단을 벗어나므로써 자신들의 개인적 이상을 지켜야 할 것이다.

<18> [Zola 내용 확인] 위 제시문에 근거하여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시오.(가급적 제시문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할 것.)

- ① 사람들은 본래부터 어느 정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② 사람들의 이성적 능력은 정의감과 무관한 능력이다.
- ③ 사회집단은 개인보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이 부족하다.
- ④ 개인의 이기심은 집단 안에서 억제되어 나타난다.
- ⑤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 사이의 갈등은 일시적이다.
- ⑥ 개인적 측면에서 최고의 도덕성은 정의이다.
- ⑦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궁극적으로 일치한다.
- ⑧ 이기심이나 반항, 강제력 같은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 ⑨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배타적이다.
- ⑩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쉽게 조화될 수 있다.
- ⑪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개인의 양심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18> [옳은 내용] 1, 3, 11

[교학사 교사용 지도서] 니부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와 사회(국가, 인종, 경제) 집단의 도덕적·사회적 행위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개인들은 행위의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신의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다. 그들은 본래 동정심의 척도와 그와 같은 이해심을 부여받았으며, 그 폭은 빈틈없는 사회 교육에 의해서 확대될 수 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정의감에 민감하게 한다. 교육적인 훈련이 이러한 정의감을 순화시키고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을 몰아낼 수 있다.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공정한 객관성의 척도로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서 이러한 모든 성과들을 이루기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경우보다 더욱더 어렵다. 모든 인간 집단에서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보다 충동을 견제하고 인도할 이성이 적고, 자기 초월의 능력이 적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적고, 따라서 더욱더 많은 무제한의 이기주의가 그들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개인의 도덕에 비해서 집단의 도덕이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자연적인 충동에 견주기에 충분히 강력한 이성적인 사회 세력을 확립하는 난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는 자연적 충동에 의해서 그 응집력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개인의 이기주의적 충동이 합성된 집단 이기주의(collective egoism)의 표출이기도 하다. 개인의 이기주의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표현될 때보다도 공동의 충동으로 연합될 때 더욱 생생하게 표현되고 더욱 누적된 파장을 나타낸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다른 것이 논쟁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도덕주의자들과 세속적인 도덕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이기주의가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으로 주입된 선한 의지의 성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견제를 받는다고 상상하며, 모든 인간 사회와 집단 사이의 사회적 조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의 지속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도덕주의자, 사회학자, 교육가들이 작성한 사회 분석과 예언들은 결국 우리 시대의 매우 현저한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왔다. 그들은 자연 질서에 속해 있으면서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집단적 행동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서,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정치적인 필연성을 무시한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형태로나 계급 지배의 형태로나 집단적인 권력이 약한 자들을 착취할 때 그에 대항해서 다른 권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권력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양심과 이성이 투쟁에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권력을 제한시킬 뿐 철폐시키지는 못한다.

[교학사 교과서]

니부어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지닌 타인·이웃·소속 집단에 대한 이타심이 확대되어 국가에 대한 것일 경우 애국심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애국심은 자국과 타국이 대립할 때 흔히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자극한다. 이러한 행동의 예는 타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이타적 행위를 하는 종교인들 중에 타 종교와 대립할 때 그 종교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참고] 교학사 교사용 지도서, 교수·학습 지도안(일부)

-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애국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 긍정적 측면: 국가에 대한 사랑
- 부정적 측면: 집단적 이기주의, 소비니즘*

* 소비니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배외주의(拜外主義)에 빠져, 편협하고 광신적인 애국주의나 국수적인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6강

킬러 · 통수 in 분배 정의

Zola B 하나나 제거

<19> [문제] 아래 문장 중에서 항상 '참'인 것들을 고르시오.

1. 정의로운 분배는 균등 분배이다.
2. 정의로운 분배는 차등 분배이다.
3. 공정한 분배는 정의로운 분배이다.
4.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할당하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이다.
5. 사회적 · 경제적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
6. 불평등한 분배는 교정되어야 한다.

7. 타고난 우연성은 불평등하다.
8. 타고난 우연성이 불평등한 것은 불공정하다.
9. 불평등한 우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10. 절차가 평등하면 결과는 평등하다.

<19> 참-3, 4, 5, 7, 9

zola 킬러 · 통수

[문제] zola OX

<20> ◆아리스토텔레스◆

1.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에 따라 분배하면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따르는 정의는 특수적 정의이다.
3.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따르는 정의는 특수적 정의가 아니다.
4. 정의는 공동체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5. 각자의 가치에 근거하여 교정해야 한다.

<21> ◆공리주의◆

1. 사적 이익을 전제로 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2. 공정한 분배의 결과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3. 정의로운 분배는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22> ◆마르크스◆

1.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다.
2.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산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3. 노동 참여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 차이는 인정될 수 있다.
4. 노동자 각자가 지닌 생산성은 동일하다.
5. 분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20> O-2, 4

X-1, 3, 5

<21> O-1

X-2, 3

<22> O-3, 5

X-1, 2, 4

<23> ◆롤스◆

1. 분배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2. 공정한 절차만 있으면 결과를 평가할 독립된 기준은 없어도 된다.
3.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4.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한다.
5.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나 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다.

6.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공리성의 원리를 거부하지 않는다.
7. 제1원칙에 의해 포괄되는 기본적 권리들이 차등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경제적 이익과 교환되어서는 안 된다.
8. 기회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9. 차등의 원칙이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10.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11. 사회 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협력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로워야 한다.
12.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23> O-1, 2, 3, 4, 7, 8, 10, 11, 12
X-5, 6, 9

<24> ◆노직◆

1. 인간은 합리적 이성애 의해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2. 개인들은 목표 실현 과정에서 다른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의 도움을 받는다.
3. 개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는 어느 인간이나 집단도 이 권리들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4.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에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5. 분배에 있어서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6. 과거의 상황 또는 과거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7. 각자의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다.
8. 분배적 정의의 합당한 기준을 수여자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9.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10.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최초의 소유권이 규정된다.
11. 약자를 위해 자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정의롭게 행사하는 것이다.

12. 최소 국가는 부정의의 교정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13. 최소 국가는 개인들을 권리의 소유자인 인격으로 취급한다.
14.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15. 롤스와 달리 노직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16. 롤스의 이론은 역사적 소유 권리론과 양립 불가능하다.
17. 롤스와 노직 모두 시장을 통한 분배를 긍정한다.

<24> O-1, 2, 3, 4, 5, 6, 7, 9, 10, 11, 13, 14, 16, 17
X-8, 12, 15

Zola Bonus

[ebs+교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을 일반적(보편적) 정의라고 하고, 일반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의를 특수적 정의라 하였다. 특수적(부분적) 정의로는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다. 분배적 정의가 가치에 비례하는 몫의 분배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시정적(교정적) 정의는 교섭에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추구한다. 교환적 정의는 물건의 교환과 관련된 정의이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의 교환이면, 그 교환은 올바르다.

종류	내용
일반적(보편적) 정의	* 법을 준수(준법)함으로써 정치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 *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미덕(탁월성)을 구현하는 것
특수적(부분적) 정의	일반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
(교환적 정의)	* 물건의 교환 상황에서 적용됨 → 오늘날 잘 다루지 않음 * 교환되는 재화의 가치만큼 =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
분배적 정의	* 권력, 지위, 명예, 재화 등 * 각자의 가치(공동체에 기여도)만큼 =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
시정적(교정적) 정의	* 교섭에 있어서 잘못된 것(타인에게 부당한 해나 이익을 끼침) * 부당한 만큼 =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

[교학사] 마르크스의 ‘필요의 원칙’

마르크스는 사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공과와 원칙(기여의 원칙)은 개인들이 타고나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는 점과 그로 인해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기여의 원칙의 대안으로 ‘필요의 원칙’을 제시한다. 필요의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다.”라고 표현된다.

zola 롤스

[롤스, “정의론”]

(1) 사상 체계의 첫 번째 덕목이 진리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세련되고 간결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복지라는 명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일부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2) 절차적 정의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있으며, 동시에 공정한 분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도 있는 경우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있으나 이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이다. 즉 올바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적용되는 절차가 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해서 그릇된 결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따르면 절차가 결과한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노름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상이한 기대를 한다. 이런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어떤 출발점은 다른 출발점보다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뿌리 깊은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산(천부적 재능과 능력)은 사회적 여건과 불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천부적 자산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것을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라 한다. 즉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으로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이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 때문에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개인이 지닌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재능에 따른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 우리는 사회에서 맨 처음 주어진 출발선이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내게 분배된 타고난 재능도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중략)… 어렸을 때 좋은 가정과 사회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차등의 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중략)…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해, 그러한 우연을 불행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다.

(6) 사회에는 조정, 효율, 안정 등의 기본적 문제들이 있다. 개인들이 갖는 인생 계획이 상호 융화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계획들이 모두 타인의 합당한 기대에 과히 어긋나지 않게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계획의 실현은 효율적이면서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사회 협동 체제는 안정된 것이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호응을 받는 동시에 그 기본 규칙들은 기꺼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반이 생길 경우에는 더 이상의 탈선을 예방하고 그 체제를 복구하려는 안정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교학사 교사용 지도서] 롤스의 정의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라 불리기도 하는 롤스의 정의론은 그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가 내세운 정의의 제1 원칙, 즉 평등한 자유(equal liberties)의 원칙은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정의의 제2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그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

의 원칙과, 둘째, 그것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다. 즉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경우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정의의 제1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제2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정의의 두 원칙은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제1 원칙 우선성 규칙, 차등의 원칙에 대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제2 우선성 규칙이 있다.

[윤리와 사상, 지학사]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장막

롤스는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 상태를 ‘원초적 상황’이라고 부르며, 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는 상태로 가정하였다.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원초적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정신적·신체적 능력,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해 무지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기본 가치, 여러 가지 자유, 기회, 권력, 소득, 부, 자존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롤스는 참가자들이 무지의 장막으로 자신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 더 공정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상교육 교과서] 계약적 상황(원초적 입장)의 조건

1. 다른 사람의 이익에 상호 무관심
2.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달성됨(자원이 적당히 부족)
3. 무지의 베일
4.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인지함
5. 개인은 모험을 싫어함

☞ Zola Guide 개인적으로 찍기를 싫어하지만 Zola가 찍는 킬러 내용(선지)들임.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1) 우리는 노동을 통해 어떤 것을 소유할 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그 소유물을 취득할 응분의 권한을 가진다(취득의 원칙). 우리는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양도의 원칙). 취득과 양도 시 과오나 그릇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교정의 원칙).

(2)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

(3)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최소 국가는 옳을 뿐만 아니라 영감을 고취시킨다.

(4) 어느 누구도 사막에 있는 유일한 우물을 사유화하여 그가 원하는 물값을 요구할 수 없다. 개인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어떤 것에 노동을 가하여 가치 있게 만든 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

[참고 글] 노직에 따르면 경제적 정의가 중앙 집권적 분배 과정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오직 최소 국가에 의해서만 경제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노직은 ‘분배적 정의’보다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고 부르기를 선호한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그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윤리와 사상, 교학사] 노직

노직에 의하면, 최초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소유되지 않은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함으로써 가치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함을 주장한다. 이때 타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같은 품질의 좋은 것이 남겨질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소유자가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한다면 그 이후의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가 제한되어 타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의 원리, 즉 개인 간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 발생한다. 개인의 사적 소유권은 그 최초의 획득과 그 이전 과정이 정의로웠다면 그 결과 상관없이 정당하다.

단, 최초의 소유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제와 같은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교정되어야 한다. 소유권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근거는 소유물의 이전 과정이 정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교정의 원리는 부정의의 교정도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과거의 부정의한 사실을 교정할 때뿐이다. 만약 최초의 소유와 이전의 과정에서 부정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직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복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부정의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무정부주의도 부정의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직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 국가이다.

[14 ebs 수특] 롤스와 노직

롤스는 정의를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계약 당사자들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는 정의의 원칙을 산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롤스는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해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노직은 최소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국가는 부정확한 계약의 감시, 거래자의 안전 보장 등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고 보고 국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분배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롤스가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통해 시민들의 평등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노직은 소유권 보호를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롤스가 사회의 빈곤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정의의 원칙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본 반면, 노직은 '한 개인의 소유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배가 정당하다'고 전제하는 '권한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롤스와 노직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7강

킬러 · 통수 in 교정 정의

Zola B 하나나 제거

<25> [문제] 하나나 선지(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선지)를 고르셈!

1. 죄와 벌은 비례 관계여야 한다.
2.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3. 형벌은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다.
4. 사형은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다.
5. 형벌은 필요하다.
6. 사형은 필요하다.

<25> 0-1, 2, 3, 5

X-4, 6

zola 킬러 · 통수 1

[문제] zola OX

<26>◆응보론 · 의무론(칸트)◆

1. 형벌은 일종의 정언 명령이다.
2.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악이지만 도덕적 의무이다.
3.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을 제시할 수 있다.
4. 형벌은 동등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5. 형벌은 등가치 보복을 따라야 한다.
6. 살인자라도 그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7. 살인자는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8. 살인자는 생득적 인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9. 정의는 사법권의 이념이다.
10. 사형은 공적 정의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것이다.

<26> 0-1, 3, 4, 6, 7, 9, 10

X-2, 5, 8

zola 킬러 · 통수 2

<27> ◆예방(억지, 억제)론 · 공리주의(베카리아/벤담)◆

[문제] zola OX. 사상가마다 답이 다르다면 구분할 것.

1. 형벌은 수형자의 신체에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2. 덜 해로운 위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에 부합한다.
3. 형벌은 범죄를 결심한 자로 하여금 큰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4.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 사람의 죽음일 경우 사형은 허용 가능하다.

5. 형벌의 목적은 일반 예방주의가 아닌 특수 예방주의이다.
6. 형벌의 목적은 특수 예방주의가 아닌 일반 예방주의이다.

7. (벤담) 도덕과 법은 동일한 하나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8. (벤담) 형벌의 확실성이 부족하다면 형량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9. (벤담) 형벌은 그 자체로는 악이다.

10. (베카리아) 가혹한 형벌보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형벌이 더 효과적이다.
11. (베카리아)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zola 킬러 · 통수 3

<28> ◆사회 계약론(루소/베카리아)◆

[문제] zola OX. 사상가마다 답이 다르다면 구분할 것.

1.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은 사회 계약으로부터 나온다.
2. 구성원의 동의에서 형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3.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4. 살인자를 처벌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5. 살인자도 시민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

6. (루소)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에 있다.

<27> 0-1, 2, 3, 4, 7, 8, 9, 10, 11

X-5, 6

<28> 0-1, 2, 4, 6

X-없음

(루소와 베카리아의 입장이 다른 선지)

3 → 루소O, 베카리아X

5 → 루소X, 베카리아O

Zola Bonus

<29> [문제] 제시문에 근거하여 문장의 진위를 판단하시오.

[베카리아]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법은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일 뿐이다.)

[칸트]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이다.

1. (베카리아) 사회 계약의 내용 속에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칸트) 사회 계약의 내용 속에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29> O-1, 2

베카리아-벌 받는 자는 자신의 생명박탈(사형)에 동의 안 했음

칸트-형벌(사형)은 벌 받는 자의 동의에 근거하지 않음

Zola Bonus

1. 베카리아

예방론(공리론)	계약론
<p>1.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도이다. ... (중략)...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목격자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비슷한 짓을 하면, 오랫동안 저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겠구나” 하고.</p> <p>2. 형벌이 정당화하려면, <u>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u>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p>	<p>3.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u>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적 일반의사를 대표한다.*</u>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 개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이 같은 점을 수공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 <u>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u></p> <p>☞ Zola Guide * 부분은 공리론에 해당하기도 함. ‘개인의 이익의 합=사회 이익’이라는 의미임.</p>

[참고] 베카리아는 ‘모든’ 사형제도를 반대했는가? No!!!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선취하는 셈이다.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부형태에 위험한 혁명을 야기할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이다.

☞ Zola Guide 교육과정 밖이니 신경끄실 것! 제시문으로 출제되면 독해하면 그만임! 단, 베카리아의 다른 글과 섞여서 나올 때 베카리아가 아니더라도 단정지면 곤란하니 참고해 둘 것!

[보충] 베카리아

1.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2.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3.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형벌도 그 본질상 부정의한 것이다. 즉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4. 공공의 의사의 표현인 법률은 살인을 증오하고 살인행위를 처벌한다. 이러한 법률이 스스로 살인을 범하고, 시민들의 살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연한 살인을 명령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정당하고 유용한 법률이란 어떤 법률인가? 격렬한 정감은 우르르 덮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5.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베카리아(C. Beccaria), 「범죄와 형벌」(이수성·한인섭 공역, 길안사, 1995)

[참고] <범죄와 형벌>은 형벌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최초의 간결하고도 체계적인 서술이다. 베카리아는 이 책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개념이나 사상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생각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이 저작은 형법적 사고에 있어서 커다란 진보를 보여주었다. 이 책의 논지는 정부정책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는 고문과 비밀재판절차의 사용, 하급법관의 변절과 부패, 잔인하고 과도한 형벌과 같은 당시의 야만적 관행을 비난했다. 또한 형벌제도는 안전과 질서를 적절히 유지하는 선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한계를 넘는 것은 법률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체로 형사법은 형벌의 가혹성보다는 그 확실성 또는 타당성에서 효율성의 근거를 찾는다. 또한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베카리아는 최초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근대의 저술가이며, 따라서 이후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계속되어온 사형폐지운동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다.

-<http://c.hani.co.kr/hantoma/95859>

2. 변당,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Zola Guide** 변당에 대한 지식은 사실상 필요없다. 기본 개념으로 해결된다.

(1) 모든 법령이 지니고 있거나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을, 달리 말하면 폐해를 없애고자 한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폐해이다.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벌의 직접적인 주목적은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위법자의 행위*이거나 그 밖의 타인들의 행위**이다. 처벌은, 위법자의 의지에 대해 혹은 위법자의 신체적 힘에 대해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행위를 통제한다. 전자의 경우 처벌은 교정의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일컬어지며, 후자의 경우에는 무력화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일컬어진다. 처벌이 그 밖의 타인들의 행위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들의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외의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처벌은 아무튼 본보기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일컬어진다.

☞ **Zola Guide** 특수 예방주의(*)와 일반 예방주의(**)

3. 루소

<p>그닥 내용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론(+살짝 응보론)</p> <p>1. 개인은 자기의 고유한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 권리를 어떻게 주권자에게 이양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반문한다. 이 질문이 답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질문이 잘못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범할 권리가 있다. 화재를 피하려고 창문으로 몸을 내던지는 사람을 자살미수범이라 말한 일이 있었는가? 폭풍의 위험을 알면서도 승선하여 항해중에 폭풍을 만나 사망한 사람에게 자살죄가 적용된 예가 일찍이 있었는가?</p> <p>2. <u>사회협정*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그 목적으로 한다.</u> 목적을 원하는 사람은 그 수단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수단은 다소의 위험과 때로는 상당한 희생까지도 수반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도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은 법이 자기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위험에 대해 더 이상 알가알부할 수가 없으며 군주가 시민에게 “내가 죽는 것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는 죽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계약조건하에서만 가능하였고 또 그의 생명은 이제 자연이 베푼 은혜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조건부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p> <p>☛ Zola Guide *은 사회계약</p> <p>3.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거의 같은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우리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달게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이 계약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하기는커녕 오직 그것을 보호하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가 처형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p> <p>☛ Zola Guide 뒤에 나오는 칸트는 ** 부분을 문제 삼는다.</p> <p>4. 한편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자는 누구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된다. 그는 조국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에 대해 전쟁을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존립과 그의 존립이 양립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범법자가 처형당할 때는 시민으로서라기보다 차라리 적으로 간주된다. 이 처벌의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깨뜨렸고 따라서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선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은 최소한 그의 거주지로 인해 국가의 구성원임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사회계약의 위반자로 국가로부터 추방되거나, 아니면 공공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적은 법률적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며 이 경우 전쟁의 권리는 피정복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p>
-----------------	--

4. 칸트

☞ Zola Guide 칸트의 핵심 명제는 ‘**형벌은 정언명령**’이다.

<p>응보론 1 - 예방론(공리론) 까기 베카리아(벤담도) Cival!!!!</p>	<p>응보론 2 - 계약론 까기 루소/베카리아 Cival!!!!</p>
<p>1. <u>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침내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분명 나쁜 일이지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에 찬성하고, 비록 거기서 유익한 것이 생겨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옳은 것으로 여긴다.</u></p> <p>2. <u>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방호해준다. 그의 형벌에서 그 자신이나 동류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u></p> <p>☞ Zola Guide 교화의 경우(특수 예방주의*)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지 않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칸트는 교화의 목적이 고상하게 들리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즉, 범죄자의 교화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은 인간을 단지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본다. 칸트의 얘기는 그러하다.</p> <p>☞ Zola Guide ** 부분을 독해력 부족한 banana들이 ‘형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로 해석하고 가르쳐서 오개념이 생기는 부분임.</p>	<p>3. <u>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무릇 누군가에게 그가 의욕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은 아니며, 형벌받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u></p> <p>…(중략)… 형법률을 구술하는 공동입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무릇 그러한 자로서, 곧 범죄자로서 내가 입법에서 표를 가질 수는 없다. (입법자는 신성하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로서의 나에 대해 하나의 형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순수한 법적으로 – 입법[법칙수립]하는 이성[예지적 인간]이며, 이 이성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로서의, 따라서 하나의 다른 인격[현상적 인간]으로서의 나를 시민연합체 중의 여타의 모든 이와 함께 복종시키는 것이다.</p> <p>☞ Zola Guide 그냥 무시하셈. 교육과정 밖임</p> <p>4. 바꿔 말하자면, 국민(즉 국민 중의 각 개인)이 아니라, 법정(즉 공적 정의)이,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하는 것이며, <u>사회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u> 무릇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게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겠고,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p> <p>☞ Zola Guide 사회계약에는 범죄자의 자신의 생명 처분에 대한 동의 여부가 포함되지 않음!</p>

[보충] 칸트가 말하는 형벌의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유죄 조건: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고, ‘어떤 다른’ 이유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비례원칙, 동등성의 원칙: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의 ‘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원칙은 사형제도를 불가피하게 시인하도록 이끈다.
- * 이상의 자료는 <응용윤리학 - 사형제도의 윤리적 쟁점과 찬반논쟁 - 김남준(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의 자료가 많이 도움 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보충] 칸트, “윤리형이상학”

1. 법관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건 시민사회를 위해서건 어떤 다른 선(善)을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 도리어 그것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과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이다. 공리론이 형벌관념 속에 뱀처럼 기어들어와 형벌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통해 이 정언명령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마치 ‘전체 백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한 바리새인의 말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방어할지이다! 왜냐하면 정의가 몰락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하더라도(예컨대 한 섬에 사는 백성들이 그 섬을 해체하고 다른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결의한 경우처럼) 감옥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미리 처형하고 나와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 어떤 값을 치루어야 할까를 경험하게 되고, 이 처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흘린 죄가 전체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처형을 하지 않은 백성도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에의 동참자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의 처벌을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분동을 사용하는 접시저울에 서와 같은 등가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다른 국민의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셈이 된다. 만일 네가 그 사람을 모욕했다면, 너는 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그에게 사기를 친다면, 너는 너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준은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동요하기 마련이며, 또 그 경우에 연루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판결에는 적합하지 않다.
3. 그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生)과 사(死)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8강

킬러 · 통수 in 준법과 시민 불복종

<30> Zola B ㅏ 나나?!

1. 님의 조선어 확인

[제시문]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감옥이다.

- ① 글쓴이는 고통을 감내하고자 한다.
- ② 글쓴이는 고통을 감수하고자 한다.
- ③ ①, ② 모두 해당한다.

2. 님의 ‘롤스 제시문’ 확인

- (1)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안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 (2)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밖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 (3)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안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 (4)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밖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30>

1. ① 감내 : 堪耐 어려움을 참고 견딤 // 감수 : 甘受 책망이나 고통 따위를 달게 받아들임
2. (2)

zola 킬러 · 통수 1

[문제] zola OX

<31> ◆아리스토텔레스◆

1. 국가는 구성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2. 준법은 공동선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
3. 준법은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한다.

<32> ◆로크◆

1.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2.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다.

<33> ◆롤스◆

1. 시민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는다면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3. 거의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는 공적인 정의관이 있다.
4. 거의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는 공유되는 정의관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문제가 처리되고, 헌법이 해석된다.

<31> O-2, 3

X-1

<32> O-1, 2

<33> O-1, 2, 3, 4

zola 킬러 · 통수 2

[문제] zola OX

<34>◆소로◆

1. 시민 불복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시민 불복종은 신중한 행위이다.
3.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행위이다.
4.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다.
5. 법보다 상위의 원리가 존재한다.
6. 인간이기 이전에 국민이어야 한다.
7. 법에 대한 존경심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불의의 하수인이 된다.

<35>◆롤스◆

1. 시민 불복종은 원초적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2.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과 헌법의 정의로움을 전제로 한다.
3.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양심적인 위법 행위이다.
4.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따르는 행위이다.
6. 시민 불복종은 체제를 파괴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는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이 포함된다.
8.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확립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9. 헌법이 정의로울 경우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할 수는 없다.

<34> O-1, 2, 3, 4, 5, 7

X-6

<35> O-2, 4, 5, 6

X-1, 3, 7, 8, 9

<36> ◆싱어◆

1.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될 수 있다.
2. 룰스와 달리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3. 시민 불복종으로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가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보다 크다면 불복종해야 한다.

<37> ◆드워킨◆

1.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2. 시민들의 충성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것이다.
3. 정부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무력 진압이나 혹독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36> O-1, 2, 3

<37> O-2, 3

X-1

Zola Bonus

I. 준법

(1) 동의론

[비상교육+17+18 ebs 수특] 로크, “통치론”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중략)…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 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 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미래엔, 15 개정]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한다.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가는 각 개인에게 국가의 명령을 내리거나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 공정성

① 비상교육

공정성이 준법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동의와 보은의 근거는 법이 사악해도 묵시적 동의나 은혜를 입으면 지켜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공정성의 근거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 준법의 근거로서 공정성의 원리는 먼저 제도와 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공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사회 제도가 정의로울 때 그 제도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자기 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했다면, 그 규칙이 규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역할 수행에 따른 이익만을 챙기는 것은 무임승차와 같으며,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

② 롤스 1, “정의론”(이학사)

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정의로운 제도가 현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에 따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제도가 현존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그러한 것이 성립될 수 있을 경우에도 정의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기대할 만큼 정의로울 경우,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게 된다. 각자는 약속에 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의 자발적인 행위에 상관없이 구속을 받는다.

③ 롤스 2, 19-9-19 제시문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II. 시민 불복종

1. 소로

(1) [미래엔]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는, 어떤 때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 바보 같은 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독재 정치는 독재자가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 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동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한다면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하라.

(2) 누군가를 부당하게 감옥에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 노예의 나라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명예롭게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은 감옥 뿐이다. … 당신의 표를 모조리 던져라, 단지 종이 쪽지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모두를 던져라, 다수에 순응하는 소수는 무력하다. 아니 소수라는 이름조차 과분하다. 그러나 소수가 온 힘을 다해 가로막으면 그 힘은 불가항력이 된다. 정의로운 사람을 모두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를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정부는 꼼짝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설사 올해 천명의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세금을 냄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폭력을 휘두르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만큼 폭력적이고 유혈적인 행위는 아닐 것이다. 만약 평화적인 혁명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실로 이것이야말로 평화적인 혁명의 의미이다.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

(3) [비상교육]

소로는 양심의 법이 정부의 법보다 한층 고차원적인 법이며, 두 법이 충돌한다면 시민은 정부의 법보다는 양심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게 의무라고 주장했다. 정당하지 않은 법이 존재한다면 시민은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불복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동료 시민에게 잘못을 자각시켜, 올바르게 정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 Zola Guide 소로적 느낌을 느껴봐. (환경 윤리에서 나오는 자료이지만, 이런 친구가 부정의한 정부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감’을 잡아보길 바란다.

[미래N]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드득후드득 떨어지는 빗속에, 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너무나도 감미롭고 자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 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적인 감정이었다. … 나는 사람들이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장소에서도 나와 친근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분명히 느꼈다. 나에게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거나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반드시 어떤 인간이거나 어떤 마을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장소도 나에게 낯선 곳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소로, “월든”

2. 롤스, “정의론”

(1) [교학사]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행위는 ‘마지막 수단’이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청원·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야 한다. 셋째,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넷째,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2) [미래엔, 윤리와 사상]

시민 불복종은 … 첫째, 시민 공통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신념에 의거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요건이 될 수 없다. 둘째, 공공적 행위여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공공 원칙에 관련된 것을 양심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공공 원칙에 관한 논의만큼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비폭력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동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미래엔, 15 개정(17 ebs 수특 일부 재인용)]

현존 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때로는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요구 사항들은 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한 정도에 달려 있다. …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르게 된다.

(4) [천재교육, 15 개정]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 2원칙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할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이 만족되었는지를 판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원칙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결국 그것은 제도 속에 선명하게 표현되어야만 할 어떤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들이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나 재산을 소유하고 이주할 권리가 거절될 때, 혹은 어떤 종교 단체들은 억압받고 다른 어떤 단체들은 여러 가지 기회가 거절될 때 이러한 정의롭지 못함은 모든 이에게 분명할 것이다.

(5)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저항함으로써 정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안정을 가져온다.

3. 드워킨, “원리의 문제들”

(1) [천재교육, 15 개정]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의 동기나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민 불복종의 유형이 나누어진다.

먼저 양심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반대하거나 도망친 노예를 노예 주인이나 관리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이 불복종 행위 자체가 도덕적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정의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흑백 분리 식당에서 흑인이 백인의 좌석에 앉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고,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서 국가의 전쟁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정책 자체가 비도덕적이거나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복종하는 경우이다.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이용하여 자국을 방어하는 것에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2) [기타]

①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저항해야 한다. ... 시민들의 충성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것이다. 시민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숙고를 거듭하여 기존의 법원의 판결이 그릇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할 수는 없다.

② 자유란 곧 존엄, 자존, 진정성이다. 인간적 평등 즉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4. 싱어(천재교육)

(1) [천재교육]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 행위의 성공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공리주의적 계산을 거쳐야 정당화될 수 있다.

(2) [실천 윤리학(3판, 연암서가)]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문해 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9강

킬러 · 통수 in 전쟁과 평화

전쟁 B나나

<38> [과제] OX한 후에 나랑 얘기 좀 하자!

1. 전쟁은 공적 영역이다.
2. 전쟁은 정치적 영역이다.
3.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하나의 국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5.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6. 상대국의 동의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7. 상대국의 동의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활용 B나나(종로 19년 4월)

Zola Guide (1) 갑 사상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Zola의 설명을 들은 후에 풀 것!

(2) 갑 사상가가 누구인지 알겠다면 그 사상가의 핵심 개념을 이용(응용, 활용, 적용)해서 답을 도출할 것!

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갑 :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정체가 공화 정 체여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 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p> <p>을 : 평화는 폭력이 제거될 때 달성될 수 있으며,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있다.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번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갑 : 평화는 도덕적 명령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가 된다. ② 갑 : 평화 조약을 통해 국제 사회의 영구 평화가 달성된다. ③ 을 : 정치적 · 경제적 억압과 착취는 문화적 폭력에 해당한다. ④ 을 : 구조적 폭력의 핵심 역할은 문화적 폭력의 정당화에 있다. ⑤ 갑, 을 : 전쟁이 영원히 종식될 때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38> O-1, 2
X-3, 4, 5, 6, 7

zola 킬러 · 통수 1

<39> ◆칸트◆

[확인] 칸트의 '의무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것!

1. 항구적이고 영원한 평화란 이상에 불과하다.
2. 도덕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참다운 정치는 행해지지 않는다.
3. 세계 평화는 보편적 의무가 아니다.
4. 세계 국가에 의한 영구 평화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이다.
5. 평화란 모든 적대 행위의 종료를 의미한다.
6. 세력 균형을 통해 국가 간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
7. 국가들은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8. 적대 행위의 중단이 영구 평화에 대한 보증은 아니다.
9. 영구 평화를 위해 독재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정당화된다.
10. 모든 국가가 공화정체가 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11. 국제법은 이성의 명령에 근거한 보편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12. 국가는 서로를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공화정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먼저 연방을 결성해야 한다.
14. 공화국으로 전환된 국가들이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15. 세계 시민법은 권리가 아닌 박애에 관한 것이다.
16. 제도의 개선은 평화 달성에 기여한다.

<40> ◆갈통◆

1. 평화는 폭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2.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3. 평화가 국가 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4. 인간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는 적극적 평화가 달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5.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6. 목적으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
7. 가해자가 불분명한 폭력이 존재한다.
8. 폭력은 의도성을 전제로 한다.
9. 구조적 폭력은 신체가 아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이다.
10. 제도의 개선은 평화 달성에 기여한다.
11. 문화적 폭력은 모든 유형의 폭력을 은폐한다.

<39> O-2, 4, 5, 7, 8, 11, 12, 16

X-1, 3, 6, 9, 10, 13, 14, 15

<40> O-1, 2, 3, 4, 5, 6, 7, 10, 11

X-8, 9

zola 킬러 · 통수 2

<41> ◆현실주의◆

1. 국가 간 평화 달성은 불가능하다.
2. 국가 간 관계에 도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3. 국제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
4. 국제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은 군비와 동맹이다.

<42> ◆정의 전쟁론◆

1. 도덕적 판단이 항상 전쟁에 적용되어야 한다.
2.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3. 정의 전쟁이 되기 위해 전쟁 선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4. 전쟁의 수행은 언제나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5. 불간섭주의는 절대적인 도덕 원칙이 아니다.
- 6-1.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전쟁 수단이 극단적이어야 한다.
- 6-2.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계기가 극단적이어야 한다.
7.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8. (알처) 전쟁 개시의 영역이 수행의 영역보다 우선한다.

<41> O-2, 3, 4

X-1

<42> O-1, 2, 4, 5, 6-2, 8

X- 3, 6-1, 7

Zola Bonus

1. Kant, 영구평화를 위하여

칸트(Kant, Immanuel 1724~1804)의 저작으로 영구평화(세계적 규모의 법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논한 것이다. 이상으로서는 단일한 세계국가(세계공화국)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상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모든 국가가 공화정체로 되고, 이어 이 국가들 간에 '국제연맹'을 만드는 것이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문은 평화조약의 체제를 따라서 예비조항(6항)·확정조항(3항)·추가조항(2항)·부록(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예비조항'은 영구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일을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2장 '확정조항'은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을 논한 것이다. 제1항은 국내법의 관점에서 각국의 헌법은 '공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2항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연맹'(자유로운 제(諸) 국가의 연합)의 이념을 말하고, 제3항은 세계 공민법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 상호의 '방문권'의 확립을 요청하고 있다.

추가조항 제1항은 자연의 합목적성(섭리)에 의해 세계평화의 실현이 보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2항에서는 평화의 문제에 관한 철학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충고하고 있다. 부록은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칸트의 기본 태도는 도덕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참다운 정치는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서의 평화론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사상에 준 영향은 크다.

[참고] 예비조항과 확정·실천 조항

예비조항	확정·실천 조항
1. 전쟁 원인의 배제 : 평화조약을 포함해 전쟁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배제한다.	1. 각 국가에 있어서 시민적 체계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공화국의 본질인 법치 국가만이 진정한 평화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공화국화는 국제 평화 구축에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2. 국가를 물건으로 여기는 것의 금지 : 독립한 국가를 다른 나라가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제 국가의 연맹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세계 국가가 아닌 주권 국가 간의 연맹을 의미한다.)
3. 상비군의 폐지 : 끝없는 힘의 경쟁으로 다른 나라를 끊임없이 위협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해야 한다.(사람들의 자유로운 방문을 국가들이 보장해야 한다.)
4. 전쟁 국채의 금지 : 대외적인 분쟁을 이유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5. 내정 간섭의 금지 : 다른 나라의 체제나 통치에 폭력을 앞세워 간섭하지 않는다.	
6. 비열한 적대 행위의 금지 : 암살이나 독살을 이용하는 것, 항복 조약을 파기하는 것, 전쟁 상대국의 폭동을 선동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2. 갈등의 폭력과 평화의 이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① [17 ebs 수특]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욕구, 복지에 대한 욕구, 정체성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있다. 직접적인 폭력이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해자)가 존재하는 폭력이며,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 구조나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으로 익명인 경우가 많다.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나 사상, 언어처럼 상징적인 것으로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폭력이다.

② [18 ebs 수특]

외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착취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희생자들에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게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중략)… 처방 또는 치료의 두 가지 형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적 처방과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예방적 처방이다.

10강

킬러 · 통수 in 해외 원조

<43> 개념 ▶ 제시문 + 활용

[확인 1] 아래 제시문에 나타난 생활과 윤리 '개념(사상)'은?

[제시문, 16-9-19] 만일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

[확인 2] 싱어는 공리주의자임. 싱어는 아래 선지에 찬성할까?

[선지] 가난한 환자들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악(惡)은 아니다.

<43> [확인 1] 공리주의, [확인 2] 반대

zola 킬러 · 통수 1

<44> ◆공리주의 · 세계시민주의>>싱어◆

[문제] zola OX. 단,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개념'을 최대한 이용해서 판단할 것!

1. 절대 빈곤국에 대한 원조는 부유한 국가의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일보다 중요하다.
2. 원조의 의무는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한다.
3. 부의 분배에 대한 전 지구적 단일 기준이 필요하다.
4.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기아의 원인이다.
5. 해외 원조는 자기 희생의 도덕적 당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원조의 주체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면서도 원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7. 해외 원조를 할 때 모든 사람의 복지를 고르게 고려해야 한다.
8. 해외 원조를 할 때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9. 공리의 원리는 인류의 부가 균등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10. 원조는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11. 자원은 최대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12.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면 원조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3. 극단적인 빈곤은 나쁜 것이다.
14. 빈곤한 국가의 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조할 필요성이 있다.
15. 풍요한 국가들은 원조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44> 0-1, 2, 3, 4, 7, 10, 11, 13, 14, 15
x-5, 6, 8, 9, 12

zola 킬러 · 통수 2**<45> ◆국제주의+롤스◆**

[문제] zola OX. 단, 롤스에 대한 지식에 앞서 국제주의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이용할 것.

1. 국가마다 필요한 부의 수준은 다르다.
2. 질서정연한 만민들 간의 부의 수준은 동일할 것이다.
3. 해외 원조는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인권 강조는 빈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아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원조 목표이다.
6.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7.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들이 정의로운 기본 제도들을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8.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에는 한계를 두어야 한다.
9.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이다.
10.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라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1. 만민법에 따라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6> zola Bonus

[문제] 자료들을 읽은 후 12~14의 OX를 확인할 것. 단, 사상은 롤스임.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아직 성숙하지 않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적인 또는 비법적인 결정을 부모가 대신하고 돌보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지배와 보호의 관계가 성립됨.

paternalism에서 'pater'가 '아버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임. '부정주의', '부권주의', '가부장주의'로 번역되기도 함.

예) 정부가 강제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을 국민 연금에 가입시킴.

[비상교육] 부권적 간섭의 원리: 행위자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할 수 있음. 이 원리가 지나치면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12.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13. 질서정연한 사회들은 '부정주의(paternalistically)/온정적 간섭주의/부권주의'적으로 행위해선 안 된다.
14.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이 배제한다.

<45> O-1, 3, 4, 6, 7, 8, 9, 11

X-2, 5, 10

<46> O-13, 14

X-12

Zola Bonus

1. 싱어의 해외 원조

① 자기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의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에 자신의 소득 중에서 최소한 1%를 기부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부액이지 최적의 기부액은 아니다.

②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③ 정부를 압박하여 세계의 빈곤한 이들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그러한 원조가 가능하면 효과적이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책무에 따라 행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2. 롤스의 해외 원조

①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입헌적 자유주의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원조의 목적은 그러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조금씩 다르다. 신학자인 아퀴나스와 공리주의자인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개인들에 대해 일정한 의무가 있으므로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롤스는 원조를 개개인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의무로 본다. 롤스는 빈곤의 문제가 물질적 자원의 부족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제도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아 사회 구조의 개선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② 만민에게는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 국가들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 롤스는 원조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국제 원조가 민주화나 법치주의 확립과 같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조를 통해 고통을 겪는 사회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달리 말해 국제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원조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나 완화가 아닌,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로 확립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 “만민법”에 나타난 원조에 관한 롤스의 입장 : 롤스는 “만민법”에서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국제 원조에 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11강

킬러 · 통수 in 동양사상(자연관-죽음관)

<47> Zola B 하나나 확인

[18-6-8]

갑: 진인(眞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Zola 1. 밑줄 친 부분의 분별심은 무엇(사상)을 의미하는가?

Zola 2. 밑줄 친 부분은 ‘분별심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 ① (분별심으로 인해) 도를 버리게 된다.
- ② (분별심으로 인해) 도를 버리지 않게 된다.

zola 킬러 · 통수 1

<48> ◆불교◆

[문제] zola OX.

1. 자연(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하는 관계의 그물이다.
2. 삶과 죽음은 연기에 의해 일어난다.
3. 삶과 죽음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4. 업(業)을 지음이 있으면 반드시 보(報)를 받는다.
5. 업을 지음이 있으면 현생이 아닌 다음 생에서 보를 받는다.
6. 현생이 아니라 내생에서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7. 죽음은 해탈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8. 도(팔정도)를 깨닫게 되면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을 끊을 수 있다.
9. 죽음은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이다.
10. 중생들이 무리로부터 멀어짐, 오온의 부서짐이 곧 죽음이다.

<47> Zola 1. 유가, Zola 2. ①

<48> O-1, 2, 3, 4, 7, 8, 10

X-5, 6, 9

<49> ◆유학◆

[문제] zola OX.

1. 도덕적 삶의 근원은 하늘[天]에 있다.
2.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이상적 경지로 본다.
3. 만물의 생명력은 하늘의 도덕적 표현이다.
4. 하늘은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5. 죽음보다 도덕적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죽음에 대한 애도를 통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표현해야 한다.
7.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로움에 힘써야 한다.
8.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삶보다 죽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이다.

<50> ◆도가◆

[문제] zola OX.

1. 모든 존재의 원리는 도(道)이다.
2. 자연은 목적이 없는 무위의 체계이다.
3. 자연은 질서가 없는 무위의 체계이다.
4. 자연의 모든 존재는 무위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5.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이상적 경지로 본다.
6. 만물의 생명력은 하늘의 도덕적 표현이다.

7. 삶과 달리 죽음은 도에 근거한다.
8. 죽음과 달리 삶은 도에 근거한다.

<49> O-1, 2, 3, 4, 5, 6

X-7, 8

<50> O-1, 2, 4, 5

X-3, 6, 7, 8

zola 킬러 · 통수 2

<51> [문제] 제시문 연습하자. 각각의 제시문이 유·도·불 사상 중 무엇인지 맞춰보셈!

1. 발돋움하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뚜렷해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못한다.
2.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옳음은 그림에서 말미암고, 그림은 옳음에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들로 말미암지 않고 자연[天]에 비추어 본다.
3.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나는[生] 까닭에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멸하는[滅] 까닭에 저것이 사멸한다.
4. 친애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다.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는 현자(賢者)가 아니다. 이(利)와 해(害)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5.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한다.
6. 사람은 땅을 법칙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는다. 하늘은 도(道)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자연(自然)을 법칙으로 삼는다.
7. 어진[仁]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
8. 도(道)를 잃게 되자 덕(德)이 있게 되었고, 덕이 없어지자 인(仁)이 생겨났으며, 인이 없어지자 의(義)가 생겨났고, 의가 없어지자 예(禮)가 생겨났다. 무릇 예란 충신이 희박해지므로 해서 나타났으니 환란의 시초이다.
9. 도는 말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고도 이름을 드러내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만물을 덮어 기르나 주재(主宰)하지 않는다.

<51> 유-5, 7
도-1, 2, 4, 6, 8, 9
불-3